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3. . . (제 회)	

정보통신기반보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제출연월일	2023.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체계적·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도입된 지정 제도의 절차를 명확히 하기 위해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8조제7항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지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고,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개정('19.12.10.) 등으로 인한 기존 인용·피인용 조항의 불일치를 해소하여 법과 시행령 간 정합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지정절차를 명확하게 규정(안 제14조제2항)

- 지정여부 평가를 위한 기준을 통보받은 지정대상시설 관리기관의 장은 지정여부를 자체 평가하고 그 결과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규정함

나. 법률의 인용 조문 항 변경(안 제12조제2호, 제18조제1항, 제18조제2항, 제18조제3항, 제18조제4항, 제19조제1항)

- 안 제9조제2항제4호 중 “법 제11조제1항”를 “법 제11조”로 변경
- 안 제12조제2호 중 “법 제9조제3항제2호”를 “법 제9조제4항제2호”로 변경

- 안 제18조제1항 중 “법 제9조제2항”를 “법 제9조제3항”로 변경
- 안 제18조제2항 중 “법 제9조제3항”를 “법 제9조제4항”로 변경
- 안 제18조제3항 중 “법 제9조제3항”를 “법 제9조제4항”로 변경
- 안 제18조제3항 중 “법 제9조제4항”를 “법 제9조제5항”로 변경
- 안 제19조제1항 중 “법 제9조제3항제2호”를 “법 제9조제4항제2호”로 변경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전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4호 중 “법 제11조제1항”을 “법 제11조”로 한다.

제12조제2호 중 “법 제9조제3항제2호”를 “법 제9조제4항제2호”로 한다.

제14조제2항 본문 중 “지정대상시설관리기관의 장”을 “제1항에 따라 마련된 지정여부 평가를 위한 기준을 통보받은 지정대상시설관리기관의 장”으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여부 평가를 위한 기준”을 “해당 기준”으로, “제출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법 제9조제2항”을 “법 제9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법 제9조제3항”을 각각 “법 제9조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9조제4항”을 “법 제9조제5항”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법 제9조제3항제2호”를 “법 제9조제4항제2호”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정보보호책임자의 지정 등) ① (생 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보호책임자가 총괄하는 업무는 각 호와 같다. 1. ~ 3. (생 략) 4. <u>법 제11조제1항</u> 의 규정에 의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에 필요한 조치 명령 또는 권고의 이행 5. ~ 7. (생 략) ③ (생 략)	제9조(정보보호책임자의 지정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 1. ~ 3. (현행과 같음) 4. <u>법 제11조</u> ----- ----- ----- ----- 5. ~ 7.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12조(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원기관의 범위) 법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생 략) 2. <u>법 제9조제3항제2호</u> 에 따른 정보공유·분석센터 3.·4. (생 략)	제12조(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원기관의 범위) ----- ----- ----- ----- -----. 1. (현행과 같음) 2. <u>법 제9조제4항제2호</u> ----- ----- 3.·4. (현행과 같음)
제14조(지정여부의 자체평가) ① (생 략) ② <u>지정대상시설관리기관의 장</u>	제14조(지정여부의 자체평가) ① (현행과 같음) ② <u>제1항에 따라 마련된 지정여</u>

은 제13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지정단위 및 그와 관련된 세부시설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 여부 평가를 위한 기준을 근거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 여부를 자체 평가하고, 그 결과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한다. 다만, 지정대상시설관리기관의 장인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여부를 평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취약점 분석·평가 방법 및 절차) ①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기관의 장은 취약점을 분석·평가하기 위한 전담반을 구성하는 때에는 별표 1의 사항을 고려하여 취약점 분석·평가의 객관성과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관리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취약점을 분석·평가하게 하는 때에는 취약점 분석·평가 수행기관이 취득한 관리

부 평가를 위한 기준을 통보받은 지정대상시설관리기관의 장

해당 기준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취약점 분석·평가 방법 및 절차) ①법 제9조제3항

② 법 제9조제4항

기관의 비밀정보가 외부에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기관의 장이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취약점을 분석·평가하게 하는 때에는 취약점 분석·평가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 이를 직접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취약점 분석·평가 기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3. (생략) 제19조(정보공유·분석센터의 취약점 분석·평가) ①법 제9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별표 2의 기준을 말한다. ② (생략)	----- ----- -----. ③법 제9조제4항----- ----- ----- ----- ----- -----. ④법 제9조제5항----- ----- ----- -----. 1. ~ 3. (현행과 같음) 제19조(정보공유·분석센터의 취약점 분석·평가) ①법 제9조제4항제2호----- ----- -----. ② (현행과 같음)
---	--

〈 의안 소관 부서명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이버침해대응과	
연 락 처	(044) 202 - 6466